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44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 천하람 이 근석 이 주영

정성호 · 김주영 · 황운하

주호영 · 정일영 · 이용우

김병기 • 전용기 • 김영배

주철현 • 박수민 • 이인선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산업을 포함한 주요 첨단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간 산업 파급효과를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전반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짐. 이에 세계 각국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자국 산업의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경쟁국은 직접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 육성책을 동원하여 정부의투자 대비 실질 지원율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세액 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채택할 뿐이며 그마저도 실질 공제율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공제 세액의 이연한도 또한 산업별 경기순환에 미치

지 않는 10년에 그칠 뿐이어서 세액공제 제도가 산업 현장의 지원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 중 반도체 산업의 경우 그간 11년 연속 우리나라 산업 수출 1위, 국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등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 왔음. 하지만 그간 국내 반도체 산업의 주력이었던 메모리 분야가 아닌 가격 변동성이 낮은 비메모리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요과점의 위험을 분산하고자 반도체의 수요처를 기존의 모바일(휴대전화)에서 자동차, 인공지능(AI) 등으로 다변화하여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이에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핵심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되는 자산에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를 현행법상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해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144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을 "2026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속하는 과세연도"를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위한 시설"을 "위한 시설 및 건축물"로, "정하는 시설"을 "정하는 것"으로, "2024년"을 "2039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중 "속하는 과세연도"를 각각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10년"을 "10년(제10조 및 제24조의 경우 2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

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0조, 제24조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혂 개 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 - 202 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 6년 -----당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해서 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 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 다. 1. (현행과 같음) 1.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 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 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 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 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 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 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 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 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 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가.・나. (생 략)

3. (생략)

② ~ ⑥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 가.·나. (현행과 같음)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
|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u>위한 시설</u>로서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 시설</u>

| 속하는 과세 |
|---------------------|
| 연도부터 2030년 12월 31일이 |
|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 |
| 연도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
| 2 |
| 가 |
| |
| |
| |
| |
| |
| |
| |
| <u>.</u> |
| 1) (현행과 같음) |
| 2) |
| 위한 시설 및 건축물 |
| |

(이하 이 조에서 "국가 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 라 한다)에 <u>2024년</u>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생략)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
2월 31일이 <u>속하는</u>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 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 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 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 2) (생략)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
 2월 31일이 <u>속하는 과세</u>
 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
 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

| <u>하는 것</u> |
|--------------------------|
| |
| |
| 2039년 |
| <u> 2003 ਦ</u> |
| |
| |
| |
| 나. (현행과 같음) |
| 3 |
| 가 |
| <u>속하는 과세</u> |
| |
| <u>연도부터 2030년 12월 31</u> |
|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
| <u>지 각 과세연도</u>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 나 |
| 속하는 과세 |
| |
| 연도부터 2030년 12월 31 |
|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

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 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 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 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 로 한다.

② ~ ⑤ (생 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 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6, 제126조의6, 제126조의6, 제126조의6, 제126조의

| | 지_ | 각 | 과세연 | <u>도</u> | - |
|----------------|----------|-----|-------|------------------|---|
| | | | | | _ |
| | | | | | _ |
| | | | | | _ |
| | | | | . – – – – – - | _ |
| | | | | | _ |
| | | | | | _ |
| | | | | | _ |
| | | | | | _ |
| | | | | | _ |
| | | | | | |
| (<u>2</u>) ~ | | | 변행과 🌣 | | |
| | | | | - 미원공제 - 이월공제 |) |
| 11 1 1 1 - | <u> </u> | 1 0 | ויי כ | 1 5 0 7 11 | / |
| <u>(1)</u> - | | | | | _ |
| 1 - | | | | | _ |
| 1 - | | | | | _ |
| ① - | | | | | _ |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 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 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 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 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 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 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 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 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u>10년</u> |
|----------------------------|
| <u>(제10조 및 제24조의 경우 25</u> |
| <u>년)</u> |
| |
| |
| |
| |
| |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